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1994

통 일 원

책을 내면서

우리원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이나 법적 투자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북한이 제정·발표한 외국인투자 관련법들을 한데 묶어 93년 3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이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원이 발간하는 보완판에는 초판 발행 당시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개정 합병법시행세칙과 93년 4월 이후 북한이 새로 제정한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다른 법들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이미 제정된 법들의 시행세칙을 정비·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원은 이들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관심있는 분들께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의 『참고자료』에 포함된 합병회사소득세법 및 동법 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동법 세칙은 최근에 제정된 관계법들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보이나, 폐지 여부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함께 수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대북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북한의 대외 정책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94. 1.

교 류 협 력 국

목 차

1. 외국인투자법	3
2. 합작법	7
3. 합영법	10
4. 합영법시행세칙	15
5. 외국인기업법	32
6.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37
7. 자유경제무역지대법	51
8.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59
9. 외화관리법	62
10. 토지임대법	67
11. 외국투자은행법	75
참 고 자 료	81
□ 사회주의 헌법	83
□ 민 법	112
□ 합영회사소득세법	155
□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156
□ 외국인소득세법	160
□ 외국인소득세법세칙	162

1. 외국인투자법*

제 1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조 이 법은 외국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투자자란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4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 5조 다른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제 6조 외국투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 7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 8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 10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 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밀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밀에 다른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력은 해당 로동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

다.

제18조 외국인투자가는 리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 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운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다른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2. 합 작 법*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자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다.

제 6 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 투자자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50일 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 창설일로 된다.

제 9조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 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제 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제 12조 합작기업은 국가가 승인한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 13조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

제 15조 외국투자자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수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 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 기구에서는 새 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9조 합작 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 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3. 합 영 법*

제 1 장 합영의 기본

제 1 조 세계의 여러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령역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합영당사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공화국법이 규정한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 규범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영할 수 있다.

* 1984. 9. 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 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 6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등록하였을 때 조직된다.

제 7조 합영회사의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폐대상, 현물재산과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재산,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평가한다.

제 8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은 출자몫 안에서만 책임진다.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을 제 3 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조 합영회사는 등록된 자금을 줄일 수 없다.

제 3 장 리사회와 경영활동

제 10조 합영회사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 결의기관이다.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지며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한다.

제 11조 리사회는 합영회사 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 합영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 12조 회사 사장은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 합영회사 규

약 및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 진행하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3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돈자리를 두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14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료, 반제품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사 쓸때, 그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합영회사가 대외시장에서 물자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15조 합영회사는 자기의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제16조 합영회사가 종업원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과 합영 쌍방의 계약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며 리용한다.

제17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자기가 받은 로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로임의 일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4 장 결산과 배분

제18조 합영회사는 해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활동을 결산하여야 한다.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를 바친 다음, 예비기금,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

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기금을 합병 쌍방의 출자몹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합병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의 규모와 해마다 조성하는 비율은 따로 정한다. 예비기금은 합병회사에서 결손된 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제20조 합병회사의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과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병회사는 결산 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병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병회사는 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병회사는 순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 있다. 합병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22조 다른나라 합병당사자는 분배받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합병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3조 합병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병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해당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합병회사는 계속하여 결손을 내거나 합병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합병회사를 해산할 때에는 현행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분배한다.

제26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4. 합병법시행세칙*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 조 이 세칙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서기가 다른 나라들과의 합병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병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우리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체는 일정한 재산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다른나라의 회사, 기업체, 개인 및 경제조직들과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합병할 수 있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병은 전자 및 자동차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을 비롯 인민경제의 여러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 4 조 합병회사는 현대적 설비와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 등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세계적 수준의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늘리며 최단기간 안에 투자의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병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 1992. 10. 16 정무원 결정 제148호

제 6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과 합영법시행세칙,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 회사규약, 리사회 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조직된 합영회사는 회사 재산의 소유권과 기업경영권을 가지는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 8 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한 대상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경영활동 결과에서 얻은 순소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기업형태이다. 합영회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의 출자몫 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제 9 조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국가에서 승인받은 업종 밖의 다른 업무활동(무역거래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다른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11 조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체와 합영할 수 있다.

제 2 장 합영회사의 조직과 등록

제 12 조 합영회사를 조직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맺기 전에 자기기관의 성격과 임무, 직능에 맞는 적합한 업종을 선정한 다음 필요한 문건을 해당 기관(예비기술과제는 국가계획위원회, 발명권·기술문헌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자·이윤·경제타산서를 비롯 경제관계문헌

은 재정부, 건물의 시행설계는 국가건설위원회, 경제타산자료·계약서·합영회사규약 초안은 합영공업총국)에 제기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기관은 문헌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으로 합의 여부 또는 의견을 당사자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13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는 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2. 합영당사자의 이름과 법적 주소
3. 합영회사의 존속기간, 등록자금, 출자총액, 출자비율, 출자기간, 출자금 양도조건
4. 리사회의 구성과 합영회사의 관리기구
5.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6. 합영당사자들의 임무
7. 재정관리, 로력관리, 자재보장 질서 및 방법
8.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법
9. 결산과 리윤분배 방법
10. 합영회사의 해산 및 청산조건
11. 법칙적용과 분쟁처리방법
12. 계약효력발생조건

제 14조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져야 한다. 회사규약에는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들의 이름과 법적 주소, 합영회사의 등록자금과 출자총액, 출자비율, 출자금의 양도조건, 결산과 리윤분배 방법, 리사회 구성, 리사회구성원들의 임무, 리사회규칙, 회사관리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절차, 재정의화관리절차와 방법, 합영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 합영회사규약의 수정보충절차등 합영회사의 사업내용과 활동원칙 및 질서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제 15조 합영회사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맺는 차제로 합영공업총국(이 아래부터 합영주관기관이라 한다)에 합영회사조직 승인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조선문과 외국문으로 된 계약서와 경제타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16조 합영주관기관은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한달 안으로 심의하고 국가승인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17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합영계약과 합영회사규약은 합영회사조직이 승인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영계약서와 회사규약 내용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 합영당사자들은 합영회사조직이 비준된 날로부터 60일 안으로 자기출자분의 5%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 19조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회사조직이 비준되면 합영회사조직승인통지문건을 첨부한 합영회사등록신청서를 해당 도행정경제 위원회에(이 아래부터는 회사등록기관이라 한다)내야 한다.

제 20조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안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등록된 날부터 법인으로 한다.

제 21조 합영회사의 당사자들은 회사조직을 비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으로 다음과 같이 출자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1. 출자총액이 300만달러까지는 70%
2. 출자총액이 301만달러~1,000만달러까지는 60%
3. 출자총액이 1,001만달러~2,000만달러까지는 50%
4. 출자총액이 2,000만달러이상은 40%

4. 출자총액이 2,000만달러이상은 40%

제 22조 합병회사는 이 세칙 제21조에 규정된 대로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은행기관의 증빙문건과 생산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해당기관의 확인문건이 첨부된 영업허가신청서를 합병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제 23조 합병주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합병회사에 영업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 24조 합병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조건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 25조 합병회사가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에는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합병주관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합병주관기관은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정무원의 비준을 받아 해당 합병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합병회사는 7일 안으로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변경된 내용 대로 고쳐야 한다.

제 3 장 출 자

제 26조 합병당사자들의 출자비율은 랑측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27조 합병당사자들은 화폐,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토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출자품으로 넣지 않았을 때는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 28조 합병당사자들은 출자하는 화폐를 호상 합의하여 정한다.

제 29조 우리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조선원을 외국화폐로 환산하거나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화폐를 조선원으로 환산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공포하는 환율에 따라 한다.

제 30조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등으로 출자할 때 그 값은 국가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영주관기관이 평가한데 따라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31조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설비, 기술문헌, 발명권, 기술비결, 물자 등은 합영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필요할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장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 32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출자한 건물,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합영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33조 합영회사의 기본건설은 국가건설위원회와 합의한 시공설계에 기초하여 우리측 당사자기관이 국가계획에 맞물려 진행한다.

제 34조 상대측 당사자가 기술특허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등록문헌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허권으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권이전등록이 끝났을 때에 출자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35조 합영당사자들은 계약서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몫을 전부 출자하여야 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로부터 초래된 손해를 다른 당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36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출자몫을 다 출자하면 리사회에서 그것을 확정하고 합영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다.

제 37조 합영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을 줄일 수 없다.

제 38조 합영회사는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영회사 상대방 당사자는 출자몫을 양도받는 데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 4 장 리사회와 관리성원

제 39조 합영회사는 최고결의기관으로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3명 이상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합영당사자들이 선출하는 리사수와 리사장, 부리사장은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계약과 회사규약에서 정한다.

제 40조 리사회성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필요한 경우 합영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리사회성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성원들의 임기는 선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41조 리사회는 해마다 한번 이상 리사장이 소집하며 리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부리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리사회성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리사회에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그가 위임한 다른 사람의 결의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 날자와 장소, 토의안건은 미리 리사회성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 42조 합영회사는 리사회의 소집과 관련한 비용을 재정예산에 예견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 43조 리사회에서는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합영회사 존속기간의 연장,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등 합영회사 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44조 리사회에서 합병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리사장, 부리사장, 리사, 합병회사사장, 부사장, 재정검열원, 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 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리사회에 참가한 리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그 밖의 문제들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리사회에서 토의하는 문제들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5조 합병회사에는 사장, 부사장을 비롯한 필요한 수의 관리성원을 둔다.

제 46조 합병회사의 사장은 계약과 회사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리사업 전반을 조직지도하며 자기사업에 대해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 47조 합병회사의 리사장과 사장은 각각 다른 당사자측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사회 성원들은 필요한 경우 합병회사의 관리성원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합병회사의 사장은 리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당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일꾼들과 반드시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제 48조 합병회사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 경영용물자(이 아래부터는 물자라 한다)를 우리나라에서 사쓰거나 다른나라에서 수입하여 쓴다.

제 49조 합병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사쓰는 물자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합병자재상사를 통하여 보장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사쓰는 것이 불리하거나 불가능한 물자는 우리나라의 무역기관들과 다른 합영, 합작회사 및 그 밖에 국가적으로 승인된 자재공급기관 또는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사쓸 수 있다.

제 50조 합영회사가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물자를 사쓰려고 할 때에는 그 소요량을 전해 3·4분기까지 합영상사에 제기하여 국가계획(합영수출계획)에 맞물린 다음 합영자재상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합영수출계획에 예견된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51조 합영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쓸수 없는 물자를 다른나라에서 직접 사쓰거나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 52조 합영회사는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 앞선기술을 다른나라에서 사올 수 있다.

제 53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다른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 54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직접하거나 우리나라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때에 수출허가는 받지 않고 반출승인만 받는다.

제 55조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하려 할 때에는 무역기관, 다른 합영, 합작회사를 대상으로 실현해야 하며 국가승인을 받아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 기업소에도 넘겨줄 수 있다.

제 56조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밑에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이때 판매가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외화가격에 기초하여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 57조 합영회사는 이 세칙 제56조에 의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을 국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에서 사쓰는 물자값과 종업원들의 로임, 각종사용료, 국가납부금을 지출하는데 쓸 수 있다.

제 58조 합영회사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하거나 다른기관에 넘기려고 할 때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대당값이 5만달러 이상되는 설비와 운전기재는 국가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59조 합영회사가 상대측당사자의 투자몹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회사경영용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수입허가는 받지않고 반입승인만 받으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제 60조 합영회사가 국가승인을 받지않고 생산 및 경영과 관련없는 물자를 수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였을 때는 해당기관이 그 물자를 억류 또는 몰수하거나 관세나 벌금을 물리는 등 해당한 제재를 준다.

제 61조 합영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는 합영회사가 스스로 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합영회사가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위탁해 제품검사를 행할 때는 검사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62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물, 전기, 난방, 통신수단

들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 63조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6 장 로 력 관 리

제 64조 합영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로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로동행정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로동행정기관은 합영회사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65조 합영회사사장은 회사의 로력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로력관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상대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미리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 66조 합영회사는 국가의 승인밑에 다른나라 사람을 종업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 67조 해당기관들은 합영사업과 관련없는 일에 합영회사의 종업원들을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68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의 로동시간, 휴식, 로동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법규에 따라 보장된다.

제 69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70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규법과 규정에 따르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제 71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로동보수의 7%, 종업원들은 받는 로동보수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바쳐야 한다.

제 72조 해당 제기관은 회사활동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합영회사 성원들의 재외출장수속을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73조 합영회사는 회사 안에 조직된 사회단체들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7 장 재 정 관 리

제 74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또는 국가가 정한 다른 대외결제은행에 외화돈자리와 조선원돈자리를 둔다.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나라의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수입과 수출은 은행에 있는 돈자리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 75조 합영회사는 은행의 예금돈자리에 있는 외화잔고에 대하여 리자를 받는다.

제 76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모자라는 외화를 우리나라은행 또는 다른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금은 합영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77조 합영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무역기관과 다른 합영, 합작회사를 통하여 사고파는 상품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는 한 외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78조 합영회사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외화로도 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에 따라 한다.

제 79조 다른나라 합영당사자는 리익배당금을 비롯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내야 한다.

제 80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로임액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다른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제 81조 합영회사에 대한 재정검열은 리사회가 임명한 재정검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합영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성원들도 재정검열을 할 수 있다.

제 8장 결산과 분배

제 82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정형을 해마다 결산하여야 한다. 합영회사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합영을 시작한 첫해는 회사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합영기간이 끝나는 마지막해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를 결산기간으로 한다.

제 83조 합영회사의 결산은 연간 총 수입금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순소득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84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서를 재정검열원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 안으로 합영주관기관과 재정부에 내야 한다.

제 85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 소득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86조 합영회사의 리익금분배는 해마다 회사가 얻은 순소득에서 소득세와 납부금, 각종 기금을 공제한 다음 남은 나머지를 합영당사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분배는 리사

소득에서 소득세와 납부금, 각종 기금을 공제한 다음 남은 나머지를 합영당사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분배는 리사회에서 결산문건을 비준한 다음에 할 수 있다.

제 87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소득가운데 5%씩 적립한다. 예비기금은 리사회결정에 따라 합영회사의 결손금을 보충하는데 쓸 수 있다.

제 88조 합영회사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등을 가진다. 이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며 기금의 조성비율은 합영회사 순소득의 3%미만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89조 합영회사는 전년도의 손실을 메꾸기 전에 순소득을 분배하지 말아야 하며 전년도에 분배하지 못한 순소득은 당해년도 순소득에 포함시켜 분배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분배받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다.

제 9 장 합영회사의 존속기간과 해산

제 90조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합영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다. 우리나라 영역 안에 조직하는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까지로 하며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상 등은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합영회사를 등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 91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회사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는 기간만기 6개월 전에 리

사회에서 결정한 다음 합병회사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합병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합병주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합병회사에 회답을 주어야 한다. 합병회사는 존속기간연장이 승인되면 10일 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제기하여 기간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9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이라도 리사회에서 결정하고 합병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1. 합병회사가 5년이상 연속 결손을 냈을 때
2. 합병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영활동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합병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 93조 합병주관기관은 합병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과 규정을 란폭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기업을 중지시키거나 국가의 승인을 받아 해산시킬 수 있다.

제 94조 합병회사가 해산될 때 리사회는 청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산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장은 자기사업을 청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95조 청산인은 리사회성원들 가운데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우리 재정기관에서 일하는 성원들을 선발할 수 있다. 합병주관기관은 청산위원회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청산위원회의 성원들의 청산사업에 동원되는 기간 그들의 로동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합병회사 자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제 96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병회사는 리사회에서 청산문건

을 비준한 날부터 7일 안으로 회사해산에 대한 문건을 합영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주관기관은 해당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합영당사자들과 재정부를 비롯한 해당기관들에 합영회사의 해산을 증명하는 문건들을 보내야 한다.

제 97 조 합영회사는 해산이 선포된 날부터 5일 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제기하여 등록문건에서 제적하여야 하며 합영당사자 기관은 합영회사가 해산된 날부터 3년 동안 합영회사의 등록과 청산문건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 10 장 분쟁 해결

제 98 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생기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

제 99 조 합영당사자들은 제기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심의해결받으려 할 때에는 소송문건을 해당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내야 한다.

제 100 조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민사소송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 101 조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재사건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원고와 피고는 중재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 102 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 103조 합영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간 동안 분쟁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들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4조 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합영회사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해줄 데 대한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5. 외국인기업법*

제 1 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 조 외국인 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업, 피복가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 7 조 외국인 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자의 자금신통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 기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에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자는 기업창설이 승인되면 30일 안에 기업 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일로 된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에 새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투자자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가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 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 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17조 외국인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도 있다.

제1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 소재지 안에 부기장부를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한 로력을 기업 소재지의 로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로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다른나라 기술자, 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외국인 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기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 및 세무정형을 검열 감독할 수 있다.

제 4 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8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자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30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31조 외국인 기업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6.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 1 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 계산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 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 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조 이 법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제 2장 기업소득세

제 8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 9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분기소득세 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월 안으로 연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

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에 하며, 연간종합계산은 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 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 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청산이 끝난 날 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 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 영역 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와 국가은행

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

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8. 개인기업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로동보수액이 2천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대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이 법 부록 2에서 정한대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5%로 한다.

제20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초과루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고정재산 처음 값의 2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금을 제공한 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한다.

공화국 은행에 저축성 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 달 10일 안으로,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다음 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 4 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 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등록취소 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3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달 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0일 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31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

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4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9조 거래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5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40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 판매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 수입금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

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

제 7 장 지방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리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

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 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 로임 총액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이 바치는 도시경영세는 월 수입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4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기업이나 광업권, 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할 경우와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바쳐야 한다.

제48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해진 세액을 해당 등록단위와 면허증 발급단위가 받아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 리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 리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자동차 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

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 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2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 리용세의 세액은 이 법 부록 6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 8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55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6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은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57조 재정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의 내용을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월 로동보수액 2천 1원부터 3천원까지 세를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월 로동보수액 3천 1원부터 4천원까지 세를 40원 더하기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월 로동보수액 4천 1원부터 5천원까지 세를 90원 더하기 4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월 로동보수액 5천 1원부터 6천원까지 세를 150원 더하기 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월 로동보수액 6천 1원부터 7천원까지 세를 220원 더하기 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월 로동보수액 7천 1원부터 8천원까지 세를 300원 더하기 7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월 로동보수액 8천 1원부터 9천원까지 세를 390원 더하기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월 로동보수액 9천 1원부터 1만원까지 세를 490원 더하기 9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월 로동보수액 1만 1원 이상은 세를 640원 더하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에 의한 소득세률표>

증여소득액 1만 1원부터 2만원까지 세율 5%,
증여소득액 2만 1원부터 4만원까지 세율 10%,
증여소득액 4만 1원부터 8만원까지 세율 15%,
증여소득액 8만 1원부터 20만원까지 세율 20%,
증여소득액 20만 1원부터 40만원까지 세율 25%,
증여소득액 4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율 30%,
증여소득액 80만 1원 이상은 세율 35%.

부록 3. <재산세의 세률표>

건물의 세율은 등록값의 1%,
선박의 세율은 등록값의 1.4%,
비행기의 세율은 등록값의 1.4%.

부록 4. <상속세의 세률표>

상속액 20만 1원부터 35만원까지 세율 6%,
상속액 35만 1원부터 60만원까지 세율 8%,
상속액 6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율 10%,
상속액 80만 1원부터 120만원까지 세율 12%,
상속액 120만 1원부터 250만원까지 세율 14%,
상속액 250만 1원부터 400만원까지 세율 16%,
상속액 400만 1원부터 800만원까지 세율 18%,
상속액 800만 1원부터 2천만원까지 세율 20%,
상속액 2천만 1원부터 5천만원까지 세율 25%,
상속액 5천만 1원 이상은 세율 30%.

부록 5. <거래세의 세율표>

생산부문의 세율은 생산물 판매액의 1.5%부터 20%까지,
술, 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은 21%부터 60%까지,
상업부문의 세율은 상품판매액의 2%,
봉사부문의 세율은 봉사수익금의 2%로부터 4%까지

부록 6. <지방세액표>

1. 등록면허세

1) 기업등록,

설립등록 세액 건당 500원부터 1천원까지,
변경등록 세액 건당 40원,
취소등록 세액 건당 40원

2) 광업권 등록

처음등록 세액 광구당 1,200원,
변경등록 광구당 10원,
취소등록 광구당 10원

3) 어업권 등록

처음등록 세액건당 1천원,
변경등록 건당 10원,
취소등록 건당 10원

4) 기술자격 면허증 발급

세액 건당 20원부터 1천원까지

2. 자동차 리용세

승용차 세액 대당 50원, 버스 12석까지 세액 대당 90원,
13-30석 세액 대당 100원, 31석이상 세액 대당 120원, 화물
자동차 세액 적재톤당 20원, 특수차 세액 대당 50원, 자동차
전차 세액 대당 20원.

7.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 1 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 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 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제 3 조 국가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지도한다.

제 4 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 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

*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과 규정에 준한다.

제 7 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제 8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속한다. 대외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다.

제 9 조 대외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 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 10 조 대외경제위원회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 승인 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협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제 11 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

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2천만원 까지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 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투자 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 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
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 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
관을 운영한다.

제16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 기업소 대표와 외
국투자가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협
의 협조한다.

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
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
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
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밑에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
로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유
경제무역지대 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 대리점, 출장
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
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

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로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고급 기능공을 지대 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밑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자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지역에 팔기위해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 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 화, 금 융

제3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폐는 조선 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 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 원과 외화로 산 조선 원은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 6 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 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 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 3 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8.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 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3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가 한다.

제 4조 외국인은 다른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제 6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가지고 사증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내야 한다.

제 7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져야 한다.

*1993. 11. 29 정무원 결정 제75호

제 8조 다른나라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 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 발급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한다.

제 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정한 기간에 여러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하여 30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제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 또는 다른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관광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 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우리나라 주재 다른나라 외교대표부, 경제무역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외교부에, 영사대표부 성원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이 밖의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에 제기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 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다.

제 1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들어 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허가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떠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 15조 자유무역항을 통해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 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어 나르려는 외국인은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5일 전에 해당지역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 17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해당발급부서에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 18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주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 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분실했거나 해당 기일 안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값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린다.

제 20조 국제 테러범, 마약 중독자, 마약 밀수입자, 전염병 환자, 정신병자와 이 밖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올 수 없다.

제 21조 증명문건을 위조하였거나 정해진 통로로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명문건을 회수하고 벌금을 물리며 그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9. 외화관리법*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높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외화에는 전환성 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 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 영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 업무를 하는 전문 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 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있다.

외화의 사고 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 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 7조 조선 원의 내국환자 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 8조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제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

제 10조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 11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1.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 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 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래

제 12조 대외경제 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 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 13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 원으로 바꾸어 자기의 돈 자리에 넣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화국 국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17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18조 공화국 령역 안에 상주하는 다른나라의 대사관, 령사관, 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화 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외화재정상 대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 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 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령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 4 장 제 재

제29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과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10. 토지임대법*

제 1 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 3 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 4 조 토지임대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 5 조 합병,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다.

제 6 조 토지임대기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 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임대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한다.

제 8 조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이용한다.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약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 11 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이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 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 12 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 및 개찰 날짜,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 조건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한다.
8.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지불한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9.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낙찰자가 정한 기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 13조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

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입차희망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3. 낙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제 14조 토지임대차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 3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 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입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 남은 이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 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금을 투자해야 입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 17조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들도 함께 넘어간다.

제 18조 토지이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권 판매 신청 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3.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

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제 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토지이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 22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은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은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3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을 해야 한다.

제 24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 25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 등록을 하며 토지 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제 26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기간 안에 저당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 안으로 토지이용권 저당등록 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 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 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다.

제 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 30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의 합의밑에 5년 안에 분할해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해서는 해당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제 31조 협상, 경매를 통해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토지 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 32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 50일 간 물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3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자는 해마다 국가가 정한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제 5 장 토지이용권의 반환

제 34조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를 40년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 수 있다.

제 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이용증을 해당 발급 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권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의 6개월 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 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이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 3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해야 한다.

제 38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하지 않는다.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여 같은 조

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해준다.

제 6 장 제재 및 분쟁 해결

제 39조 토지이용증이 없이 토지를 이용했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켰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 40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총투자액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 41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처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신고청원 하거나 해당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2조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11. 외국투자은행법*

제 1 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 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속한다. 외국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

제 3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 4조 국가는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5조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환관리기관이 한다.

제 7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1993. 11.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

제 2 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 8 조 공화국 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자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 9 조 합병은행의 설립신청은 합병당사자가 한다. 합병당사자는 은행설립 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합병계약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자가 한다. 외국투자자는 은행설립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투자자의 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 사본,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외국은행 지점의 설립신청은 본점이 한다. 외국은행 본점은 은행설립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연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중앙은행은 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는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은행설립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며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 1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업무의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으며 정산위원회 감독밑에 정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15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 하려는 경우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 외국투자은행은 기본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려고 할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17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병은행의 한편 출자가는 상대편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 18조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조선원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하고, 1차 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이상 가져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 19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 승인을 받

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1차 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에, 또는 자기 부담 채무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 21조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금으로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 결산 이익금에서 5%를 떼어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데만 쓴다.

제 22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적립비율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제 4 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 23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재돈자리 잔고초과 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 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12. 기타 업무

제 24조 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자기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제 2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 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제 2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간 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 27조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간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분기 첫날 15일 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28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2.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은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제 재 및 분쟁 해결

제 2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1. 승인없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2. 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한 경우

제 30조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 밖의 업무를 한 경우와 승인 없이 기본규약을 고쳤거나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31조 은행설립 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2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참 고 자 료

□ 사회주의 헌법*

제 1 장 정 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 6 조 균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1992. 4. 29 개정

제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당,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 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

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 2 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체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 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 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

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 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 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 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

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 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 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 교육사업과 민족간부 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

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 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

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 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 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 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 4 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 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 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 6 장 국가기구

제 1 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이다.

제88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 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나라 국회, 국제 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2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0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10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 3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 1 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

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기관 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지도하며 법 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 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5 절 정 무 원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 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으로 구성한다.

제128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 상무회의는 정무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

의 결정한다.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내린다.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 총리는 정무원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앞에 선서를 한다.

제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제 6 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 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 7 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 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 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50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 8 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152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3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54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 155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제 156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 157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8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 159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160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16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있다.

제16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6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 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제16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7 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 감은 벼 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1대 2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민 법*

제 1 편 일반제도

제 1 장 민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 3 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 4 조 계획적인 재산 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 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 1990. 9.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5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 6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7조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 8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 9조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

제 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제 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

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 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 임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 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 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 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 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자신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 의 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 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채권 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 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 국가는 국가소유 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 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에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19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제20조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제21조 16살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나 6살 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2조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 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

나 소식을 보내어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

제 3장 민사법률행위

제24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민사법률행위를 한 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제32조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제33조 대리인은 대리의 도움을 받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본인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 앞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4조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5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

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

제36조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제 2 편 소유권제도

제 1 장 일반규정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

제38조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의 발생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 받은 때부터 이루어진다.

제39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제40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소유권은 여럿이 몫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43조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 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 2 장 국가소유권

제44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45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립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 인쇄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4. 각급 학교 및 중요 문화 보건시설

제46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한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7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8조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국가소유권은 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관리권만 넘어간다.

제49조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토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 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 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 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제 3장 협동단체소유권

제53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단체 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기업, 기업소와 문화 보건시설,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

제55조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할 수 있다.

제56조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57조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개인소유권

제58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9조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0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61조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제62조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

제 3 편 채권채무제도

제 1 장 일반규정

제64조 이 법에서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65조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 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 수도 있다.

제66조 채권 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67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68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69조 채권 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의식적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70조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 수도 있고 런대

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제71조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연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 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연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4조 채무를 전부 리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 줄 의무를 진다.

제75조 연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서 다른 연대채권자들의 리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연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6조 채권자가 한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몫만큼 다른 연대채무자들의 몫은 적어진다.

제77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8조 제3자의 허물로 하여 생긴 채무를 채권자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책임진다.

제80조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한꺼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82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

제83조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되면 해당 채권 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 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 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84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 가운데서 채권 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면 그 때로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85조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 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86조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87조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 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88조 채권 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행위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89조 선택권을 가진 자가 채무리행 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 2 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90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 때에 맺어야 한다.

제91조 계약당사자들은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92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93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94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 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데서 상업적 형태를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95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기계, 설비, 원료,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96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자재의 포장조건,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97조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 보내 주거나 자기 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98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99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0조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 량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에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제101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에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으면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 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 수 있다.

제102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 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옹계 련결시

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03조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 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04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 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공장,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다.

제105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06조 공급자는 상품을 재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 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07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제108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사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9조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0조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1조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12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수매계획에서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13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에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14조 계약당사자들은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5조 수매기관은 정확히 농산물의 질을 검사하며 량을 계량 계측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 수 없다.

제116조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 밑에 생산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기본건설 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 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 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 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8조 기본건설 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119조 기본건설 시공계약의 당사자들은 건설 대상과 규모, 건설 대상의 착공, 완공 날자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 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 대상별로 맺는다.

제120조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 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 수 있다.

제121조 시공주는 건설 대상의 착공 및 완공 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2조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23조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 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하는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때에 한다.

제124조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허물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1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 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 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 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6조 화물 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 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27조 화물 수송계약의 당사자들은 짐의 이름, 나를 수량, 보내는 곳과 닿는 곳, 짐을 싣고 부리는 방법과 보내고 받을 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28조 짐보내는 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29조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 것이 없으면 짐임자가 하여야 한다.

제130조 운수기관은 짐받을 자에게 짐을 넘겨줄 때 까지 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운수기관은 나르는 짐을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주지 말

아야 한다.

제131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 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 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입자는 더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2조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 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 안에 찾아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관료나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현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133조 짐받는 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 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34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인민경제 계획에 맞물려 지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규정한 화물수송계약 질서에 따라 한다.

제 3 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제135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136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편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해

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제137조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희유금속, 그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제138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 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공민들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계약 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

제139조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 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140조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간,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말로 맺을 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과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141조 부동산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42조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 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3조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44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 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제145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 안에 물어야 한다.

제146조 계약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대상물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47조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맺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 자와 함께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제148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49조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 자는 물건을 사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 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 만이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 자가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50조 공장,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 자 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151조 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 자는 보증기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52조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희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내놓고 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 수매품종들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수매시키는 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 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4조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 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을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에 운반을 담당하는 자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55조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 살 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156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 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57조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 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 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58조 작업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 받은 때에 맺어진다.

제159조 작업맡기는 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 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하는 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제160조 작업하는 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 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 작업하는 자는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61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맡기는 자가 낸 작업대상물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 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작업하는 자는 마음대로 작업 대상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 자가 낸 작업 대상물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

제163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맡긴 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작업하는 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64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한 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이상 자기가 책임진다.

제165조 작업맡긴 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한 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6조 공민이 물건을 맡기고 검사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 행하여야 한다.

제167조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 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공민들 호상간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를 주고 받을 수 없다.

제168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 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 수도 있다.

제169조 물건을 보관시키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 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 자가 책임진다.

제170조 보관하는 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1조 려관, 극장, 회관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손님이 따로 검사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2조 보관시킨 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 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3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은 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175조 공민은 법적 의무 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처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6조 법적 의무 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받은 값 만큼 재산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7조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78조 빌리기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 자는 빌리는 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 자가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79조 공민이 도서, 특허물, 록음 및 록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 공민들 호상간의 빌리기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받을 수 없다.

제180조 빌려주는 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에 그 사실을 빌리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 자에게 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81조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의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리는 자가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 빌려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 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 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 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 자가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3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 자의 동의밑에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 이 경우에 빌리는 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 자 앞에 책임진다.

제184조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 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 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제185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구매나 그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6조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는 위탁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거래 행위를 위탁하는 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 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제187조 위탁하는 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88조 위탁받은 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자가 계약조건외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9조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권을 가지

고 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다.

제190조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가 요구한 것 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1조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제때에 넘겨받고 해당하는 보수와 그가 들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92조 이 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 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제193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여행은 려객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려객수송계약은 인민들의 여행상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94조 려객수송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 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진다.

려객수송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 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준 때에 맺어진다.

제195조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들에게 의료봉사, 도중식사를 비롯하여 여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96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 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97조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 안에 물리려고

하거나 그를 태워 갈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려주어야 한다.

제198조 여행하는 손님은 확령전 어린이를 표 없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 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 수 있다.

제199조 손님은 여행 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여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놓고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1조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줄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2조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

제203조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어느 때든지 저금하는 돈을 맡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4조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05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놓고있는 돈을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6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7조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내주지 않는다.

제208조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 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09조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며, 보험료를 물면 그때로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210조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으면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다 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211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는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2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13조 공민이 재산거래와 그밖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

제214조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 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는 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 자는 위임받는 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위임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제215조 양자관계나 유언과 같이 본인 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 수 없다.

제216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

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7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의 허물에도 속하지 않고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 자가 책임진다.

제218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9조 위임한 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 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 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0조 위임계약의 당사자들은 위임계약을 어느 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1조 공민들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

제222조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면 곧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3조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에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어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꾸 공민은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갚을 수 있다.

제224조 꾸 돈이나 물건을 정한 기간 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갚을 수 있다.

제225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26조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폐자금을 넘겨 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 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 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7조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 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는다.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금 반환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

제228조 대부받은 자는 대부금을 류용하거나 사장 랑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 전에 회수하거나 다음 번 대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9조 대부받은 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더 높은 률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230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31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 참가정도에 따라 작업 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 합동작업 계약의 당사자들은 작업대상, 기간, 질서와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 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 대표의 권한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233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 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 대표는 계약당사자들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4조 합동작업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들에게 작업실적에 따라 작업 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 데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당리득행위

제235조 법적 근거없이 남의 손실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 자는 그 부당 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36조 부당 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그 리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7조 부당 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38조 부당 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 자는 그것을 보관 관리하고 돌려주는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제239조 부당리득을 돌려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당 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 4 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 제도

제 1 장 민사책임

제240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 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제241조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허물이 있는 경우에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 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2조 민사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반환
2. 원상복구
3. 손해보상
4.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5.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민사책임은 정상에 따라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3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던 동안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통제할 의무를 진 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244조 16살에 이른 부분적 행위능력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자기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2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인이 직무수행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246조 남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차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7조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8조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49조 관리하고 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짐승의 임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 보상책임은 떨어지거나 면제된다.

제250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1조 여럿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자들은 련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2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 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을 어긴 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53조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하게 민사책임을 진다.

제254조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5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 환경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6조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또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7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는 해를 입은 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8조 민사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 2 장 민사시효

제259조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판, 중재 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61조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 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 호 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련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해당 협정에 의한 기간

제262조 예산제 국가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전이라도 그 채권이 발생한 예산년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제263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64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한 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5조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 안에 자연재해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이 법 제261조 제 1 호의 청구권에는 민사시효의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6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 때로부터 시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제267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 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268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리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69조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2. 리행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생긴 때
3.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 청구는 그에 대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하기로 된 때
4. 그밖의 청구권은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때

제270조 민사시효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며,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당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71조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날이 일요일, 명절일 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날로 한다.

□ 합영회사소득세법*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에 있는 합영회사는 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2 조 합영회사 소득세는 결산기 마다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 상하고 남은 순소득에서 문다.

제 3 조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률은 순소득의 25%로 한다.

제 4 조 합영회사는 기업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까지 소득 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 면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소득이 적을 때에는 합영 회사의 청원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 5 조 합영회사 소득세의 계산은 조선 원으로 한다.

제 6 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 날 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 7 조 재정기관은 합영회사의 소득세 납부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합영회사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 8 조 재정기관은 합영회사가 이 법을 어기였을 때에는 그 정 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1985. 3. 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제 1 조 이 세칙은 우리나라 인민경제부문의 기관, 기업소와 다른나라의 기관, 기업소(개인포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령역 안에 있는 합영회사들에 적용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에 있는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3 조 합영회사 소득세는 결산기 마다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남은 순소득에서 문다.

1. 합영회사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로 한다.

새로 조직되는 합영회사의 소득세는 기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연말까지 계산하며, 해산되는 합영회사의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해산된 날 까지 계산한다.

2.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공업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제품 판매수입에서 판매 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2) 건설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건설물을 넘겨주고 받은 수입에서 건설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수송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수송운임 수입에서 수송 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4) 상업 및 편의봉사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상품판매 및

* 1985. 5. 17 정무원 결정

편의봉사 수입에서 상품판매 및 편의봉사에 지출된 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5) 이 밖의 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따로 정하는 데 따라 계산한다.

3. 모든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 해 1월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 4 조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율은 순소득의 25%로 한다.

제 5 조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영회사의 소득세는 해당 결산기간의 순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합영회사의 소득이 우리나라 안의 여러 곳에 있는 지사들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한데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6 조 합영회사는 기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합영회사가 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정부에 소득세 면제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정부는 소득세 면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소득이 적을 때에는 합영회사의 청원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 줄 수 있다.

제 7 조 합영회사 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합영회사의 순소득이 외화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발표한 결산년도말(해산된 날 포함) 현재 돈환산비율에 따라 조선 원으로 환산한다.

제 8 조 합병회사는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 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 날 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1. 합병회사는 소득세를 결산년도 다음 해 1월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물어야 한다.
2. 합병회사는 소득세를 물 때에 소득세납부서를 만들어 거래 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검토 확인한 다음 1통은 보관하고 합병회사와 해당 기관에 각각 1통씩 보내주어야 한다.
3. 재정기관은 합병회사가 문 소득세액을 검토 확인하고, 덜 바친 소득세는 받아들이고 더 바친 소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4. 합병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물지 못하여 부과된 연체료는 재정기관이 검토하여 보고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 9 조 재정기관은 합병회사의 소득세 납부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1. 재정기관은 합병회사들과 그와 련관된 기관, 기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회사 소득세 납부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2. 합병회사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하며 재정기관의 검열에 응해야 한다.

제 10 조 합병회사는 해당 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법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 11 조 재정기관은 합병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병회

사소득세법과 이 세칙을 어기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해당 소득세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법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 외국인소득세법*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2 조 외국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제 3 조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u>월소득액</u>	<u>세 륜(%)</u>
500원 이하	면 제
501원 부터 2,000원 까지	5
2,001원 부터 4,000원 까지	10
4,001원 부터 6,000원 까지	15
6,001원 부터 8,000원 까지	20
8,001원 부터 10,000원 까지	25
10,001원 이상	30

제 4 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제 5 조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외국인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 1985. 3. 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받는 상금,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리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정하는 그 밖의 소득

제 6조 외국인소득세의 계산은 조선 원으로 한다.

제 7조 외국인소득세는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할 때 해당 기관, 기업소가 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문다.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물어야 한다.

제 8조 외국인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 날 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 9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 납부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 10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법을 어긴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외국인소득세법세칙*

제 1 조 이 세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3 조 외국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 1) 생활비(로임), 봉급 등에 의한 소득
 - 2) 가급금, 상금, 장려금, 리익배당금 등에 의한 소득
 - 3) 강의료, 번역료 등에 의한 소득
2.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3.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
외국인이 상품을 팔려고 할 때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4 조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u>월소득액</u>	<u>세 륜(%)</u>
500원 이하	면 제
501원 부터 2,000원 까지	5
2,001원 부터 4,000원 까지	10

* 1985. 5. 17 정무원 결정

4,001원 부터 6,000원 까지	15
6,001원 부터 8,000원 까지	20
8,001원 부터 10,000원 까지	25
10,001원 이상	30

제 5 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과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제 6 조 외국인들에게 물리는 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들의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외국인의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과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이 함께 있을 때에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한 사람의 로동보수에 의한 월소득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한데다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7 조 외국인의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사람별로 적용하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건별로 적용한다.

제 8 조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받은 상금,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리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
4. 외국인 유학생, 실습생, 연구생들이 받는 생활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받는 여비, 잡비, 문화비 등과 선물, 기념품 등에 의한 소득, 다른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보내오는 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정하는 그 밖의 소득

제 9조 외국인소득세의 계산은 조선 원으로 한다. 외국인의 소득이 외화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소득세를 무는 날의 돈 환산비율에 따라 조선 원으로 환산한다.

제 10조 외국인소득세는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할 때 해당기관, 기업소가 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문다.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따르는 외국인소득세는 달마다 계산하여 물어야 하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와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불할 때 마다 계산하여 문다.

제 11조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물어야 한다.

외국인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 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1. 외국인소득세는 소득이 지불된 때로부터 5일안에 물어야 한다.
2.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소득세를 물 때에 외국인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검

토 확인한 다음 1통은 보관하고, 납부자와 해당 기관, 기업소에 각각 1통씩 보내주어야 한다.

3. 재정기관은 외국인이 문 소득세액을 검토 확인하고 더 바친 소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제12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 납부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1. 재정기관은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기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소득세 납부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하며 재정기관의 검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들은 해당 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법을 어긴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과 이 세칙을 어기고 외국인소득세를 물지 않았거나 해당 소득세액보다 적게 물었을 때에는, 연체료와 함께 소득액의 10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해당 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1993년	3월	일	초 판 발행
1993년	12월	일	보완판 인쇄
1994년	1월	일	보완판 발행

발행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 738-7776, 722-8910

인쇄처 웃고문화사

<비매품>

